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46 발의연월일: 2022. 3. 2.

발 의 자: 김승수・하영제・金炳旭

정운천 • 이채익 • 임이자

이명수 · 백종헌 · 유경준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2001년도부터 발행사업자인 서울올림 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제2항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선수·감독 등을 포함한 경기관계자, 경기 주최단체의 임직원 등에 대해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알선, 양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제30조 제3항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는 위에 해당하는 자(이하 "구매환급제한자"라 한다)에게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는 구매환급제한자(약 6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와 환급행위 를 원천 차단하고 있음. 다만, 구매환급제한자가 환급대행 은행에 방문하여 환급금 지급을 요청할 시(「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 수령 등) 구매환급제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구매환급제한자의 환급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제4항에는 수탁사업자가 환급 금 신청자가 구매환급제한자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경기단체 또는 운동경기 주최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구매환급제한자 대상인 발행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누락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을 포함한다)가 구매환급제한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구매환급제한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하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게 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0조제4항, 법률 제1876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등).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수탁사업자"를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위탁 ·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경기단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발행사업자, 경기단체"로,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를 "제2항 각 호에"로 한다.

법률 제1876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수탁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제3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 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 다.

법률 제1876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2제1항 중 "제 30조제5항"을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1876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2항제2호 중 "제30조제5항"을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760호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876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① ~ ③ (생	및 구매 제한 등) ① ~ ③ (현
략)	행과 같음)
④ <u>수탁사업자</u> 는 「소득세법」	④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	무를 위탁·대행하는 자를 포
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가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금	
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u>경기단체</u>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	
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u>제2</u>	
<u>항제3호 및 제4호에</u> 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발행사업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u>자, 경기단체</u>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u>제2항 각 호에</u>
<u><신 설></u>	⑤ 수탁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
	<u>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u>

- ⑤ (생략)
- ⑥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생략)

- 제30조의2(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①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 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 라 한다)은 <u>제30조제5항</u>의 위 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제55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판

이 제3항에 따른 환급금 지금	그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역	<u>위</u>
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u>린</u>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u>⑦</u>	-
<u>제6항</u>	_
	_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30조의2(체육진흥투표권 판매	1}
관련 위반행위 조사) ①	-
	_
	_
	_
	_
<u>제30조제6항</u>	_
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30조제6항	-

메	한도	를	초과하	여	체육진
충모	亭 亚克	<u> </u> 일을	판매한	자	
		(x1)	구남 /		

③ ~ ⑤ (현행과 같음)